FTA 100% 활용하기

중소기업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FTA 특례기준

고태진 | 경영학 박사 · 관세사

중소기업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FTA 특례기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한국표준협회(KSA) 전문위원
경영학 박사, 관세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왔다. 우리나라 무역을 FTA의 환경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햇수로 15년이다. 초창기와는 달리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기 산업에 FTA 적용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1] 즉 FTA가 자기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마케팅 등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FTA 협정문에는 TBT 및 SPS와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등도 구성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기업은 우리 산업구조상 그 효과를 즉시로 체감할 수 있는 '제품 무역'에 대한 활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 무역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업과 정부의 FTA 활용 접근방식에 여러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특례(보충) 기준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소극적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중간재 기준과 누적기준은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기준을 검토하여 우리기업들이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물론 아직도 FTA 활용에 있어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부분품 납품업체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원산지규정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발효 건수는 총 424건이며 이 가운데 제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39건으로 파악되고 있다.(2016년 6월 기준)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지도자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크고 작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은 분명하다.

FTA 하의 비즈니스 핵심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품무역이 그 기본이다. 즉 FTA 체결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비체결국 물품에 배타적으로 적극적인 관세혜택을 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게 된다.

통상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말하고 있다. 협정 대상국 물품인지와 관련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여 일반 비즈니스에서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FTA 수혜의 관건인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만들게 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대놓고 언급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복잡성, 차별성 등의 이유로 무역장벽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례로 한-미 FTA 에서는 중국 원단을 들여와 의류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에 부합하게끔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 방법, 협력사 관리, 생산 방법과 그에 따른 생산시설의 구비 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원산지규정이 그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원산지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민감산업을 보호하고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TA의 제품교역에 있어 원산지 규정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데, 문제는 이러한 핵심 규정이 체결된 FTA마다 통일됨이 없이 모두 다르게 제각각이라는 데에 있다. 일찍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잘 섞어 놓은 스파게티 가락처럼 얽혀 있다고 시각적인 표현을 하였다.[2)]

엄격한 FTA 원산지규정 하에서는 기업들이 세부 규정들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따라서 발효된 전체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에서 교집합을 추출하여 그에 맞게 경영 시스템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중간재 기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운송원칙 등과 같은 일반기준과 각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정한 품목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품목별 기준 중에서는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이 있는데, 원산지 판정을 위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제품의 원산지가 역외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충적 특례 기준 중 중간재 규정을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간재 규정이란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제품의 생산자가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재료인 중간재(반제품)가 원산지 기준을

2)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아시아 지역에서는 노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도 부른다.

충족하면 해당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방법으로서 원칙적인 원산지기준을 완화한 규정이다.

중간재 기준[3]은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유인하는 기준이기도 하여 그 파급은 당장의 FTA 원산지판정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 예를 들면, 어떤 생산자가 수출 제품 S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 재료인 A(84류)를 역내산 재료(72류, 83류)와 역외산 재료(74류, 75류, 83류)를 투입하여 직접 자가생산하고 있다. 생산자는 자가생산한 재료 A(중간재)와 기타 원산지 미상재료(72류, 83류)를 투입하여 제품 S(84류)를 생산하여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중간재 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CTH이며, 제품 S의 원산지기준은 역내부가가치율 직접법 30%, 공제법 45%이다

이때 중간재 A와 제품 S 등의 원가구성은 다음과 같다.

3) 협정에 따라 중간재 기준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예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협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였음.

〈표 1〉 중간재 A 원가구성표

항 목	가격(원)
원산지재료비	3,000
비원산지재료비	8,000
노무비 및 제조경비	2,000
판매 및 일반관리비	1,000
이윤	1,000
합계	15,000

〈표 2〉 제품 S의 원가구성표

항 목	가격(원)
원산지재료비	7,000
비원산지재료비	20,000
노무비 및 제조경비	4,000
이윤 및 일반경비	3,000
국내운송비	1,000
합계	35,000

〈표 3〉 중간재 적용 후 제품 S의 원가구성표

항목	가격(원)	
원산지재료비	중간재A	15,000
	기타 재료	4,000
비원산지재료비		12,000
노무비 및 제조경비		1,000
이윤 및 일반경비		2,000
국내운송비		1,000
합계		35,000

상기 원가구성표〈표 2〉와 같이 중간재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원가내역대로라면 역내부가가치율 직접법 20%와 공제법 43%가 계상된다. 이는 S의 원산지 기준인 직접법 30%, 공제법 45% 미치지 못하여 역외산으로 판정되고 따라서 FTA 활용은 요원해진다.

표2의 부가가치 계산값

$$\text{직접법}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quad \frac{7{,}000\text{원}}{35{,}000\text{원}} \times 100 = 20\%$$

$$\text{공제법} = \frac{\text{제품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quad \frac{35{,}000 - 20{,}000}{35{,}000} \times 100 = 42.9\%$$

그러나 중간재료인 A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프로세스에 착안하여 이를 특례기준 중간재를 적용해보면 상기한 〈표 3〉과 같이 원가 구성체계가 유리하게 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중간재인 A에 소요된 역외산이었던 원재료가 롤업(Roll Up)되면서 애초에 역내산이었던 원재료뿐만 아니라 역외산 원재료도 함께 모두 역내산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율 이 직접법 54%, 공제법 66%로 중간재 기준을 활용하기 전보다 그 비율이 상승되고 원산지기준에도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재료와 생산 프로세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부정적, 후자는 긍정적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표3의 부가가치 계산값

$$\text{직접법}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quad \frac{19{,}000\text{원}}{35{,}000\text{원}} \times 100 = 54.3\%$$

$$\text{공제법} = \frac{\text{제품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FOB)} \times 100 \quad \frac{35{,}000 - 12{,}000}{35{,}000} \times 100 = 65.7\%$$

실무적으로 중간재 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중간재를 지정하고 이의 품목분류부터 시작하여 그 HS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물론 원산지소명서 등 관련 서류도 그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사례 2] 다음으로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생산된 자동차 완제품의 판매가격이 USD12,000이고, 여기에 소요된 역내산 부분품이 철강코일 등 총 USD4,000이라고 하자. 또한 투입된 역외산 부분품이 에어백, 오디오, 기타 부품하여 총 USD7,000이라고 하자. 부가가치율을 공제법으로 계산한다면 42%가 나온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정하는 부가가치 기준은 55% 이상이 되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본 완제품 자동차는 한국산으로 판정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FTA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역외산으로 계상되었던 A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직접 원부자재를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여 자가 생산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특례기준인 중간재 규정 적용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원재료인 중간재(반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의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간재인 반제품의 HS 품목분류부터 시작하여 그 HS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원산지소명서 등 관련 서류를 그에 맞춰 새로이 작성을 해야 한다.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에어백은 인플레이터(한국산), 쿠션(한국산), 커버(중국산)로 이루어져 있다. 에어백은 한-미 FTA에서 소호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백의 원산지를 판정하면 역내산이 된다.

그럼 중간재를 활용해 자동차의 원산지를 재판정하게 되면, 최초 역외산으로 계상하였던 에어백 전체가 역내산으로 전환되게 되고 이를 다시 계상하게 되면 기존 역외산 원재료 비용 USD7,000 중에서 에어백에 해당하는 비용 USD2,000이 제외되게 된다. 물론 그 금액은 역내산 원재료로 함입하게 된다.

이때 자체 생산한 에어백과 같은 중간재의 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커버 등 원재료 구매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경비, 일반경비 그리고 이윤 등도 함께 더하여져 그 금액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부가가치율을 다시 계상하게 되면 공제법 부가가치율 60%가 되어, 협정 기준선인 55%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생산된 자동차 완제품은 역내산이 되어 FTA 특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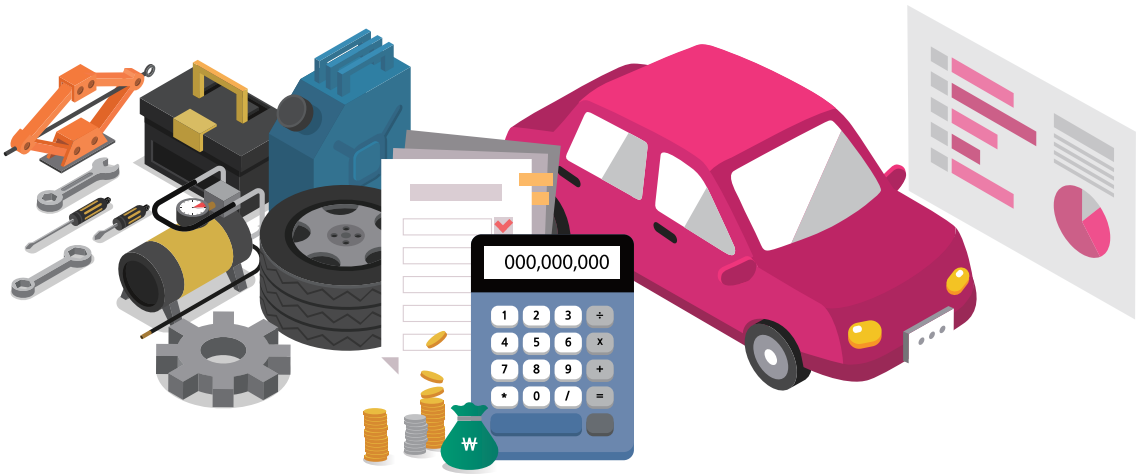

누적기준

한편, 원산지규정 중 누적기준의 활발한 연구와 이의 적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누적기준(accumulation)[4]이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협정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의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즉 미국과의 FTA에서 미국산 수입재료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산 수입재료를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른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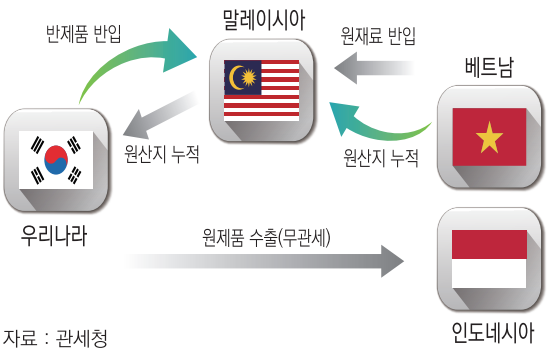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누적기준의 종류에는 첫째, 누적영역에 따라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교차누적)이 있다. 양자누적은 다시 협정국의 수에 따라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나눠지는데, 양국누적은 협정 당사국 양쪽 모두 1개국인 경우를 말하며, 다국누적은 말 그대로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의 누적으로서 한-아세안 FTA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완전누적은 FTA 협정에 의해서 창설된 전체 특혜지역은 영역 규정에 따라 하나의 누적영역으로 간주되어 당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 또는 가공공정에 대해서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동 기준은 다자무역협정인 RCEP, 한중일 FTA, TPP 등에 유의미한 것으로, FTA 특혜를 극대화하고 업체의 원산지기준 적용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며, 원산지검증을 위한 기관의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감소를 위해 공정만 확인하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누적기준이나, 현재 미국의 TPP 탈퇴 등으로 본 기준의 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5]

4) 누적은 미국에서는 'accumulation', 영국 등 유럽에서는 'cumulation'으로 표기함에 유의.
5) 칠레, 싱가포르, 인도, 미국, 페루, EU 등의 경우는 양국누적이 적용되고, EFTA, ASEAN 등의 경우는 다국누적에 해당된다. 한-EU FTA의 경우는 EU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국누적에 해당된다.

유사누적은 체약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로부터 FTA 체약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아닌' 일정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FTA 원산지규정에서 흔하게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에 적합한 기준이다.

누적대상(투입요소)에 따라 부가가치누적, 재료누적, 공정누적 등이 있다. 부가가치누적은 역내 발생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는 것이고, 재료누적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국내산 재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누적은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비즈니스 틀과 FTA의 부드러운 만남

우리나라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으로 FTA 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 9월 현재 한-칠레 등 15협정이 발효되어 있고 중미(5개국)[6]과도 타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타 한중일, RCEP(16개국)[7], 에콰도르 및 이스라엘과도 협상중이다. 단연 FTA Hub 국가라 해도 손색이 없을만하다.

그러나 FTA는 양자가 개별 협정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어떠한 협정이 다른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당 협정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중간재 및 원재료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더라도 다른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렵다.

EU에서 시작된 PAN-EURO 누적시스템은 국토가 작고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로부터 값싼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 및 생산구조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6)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7)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의 누적시스템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각각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된 상태로서 협정에서 유사누적기준을 허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아세안 국가에서 원재료 또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후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로 보아 손쉽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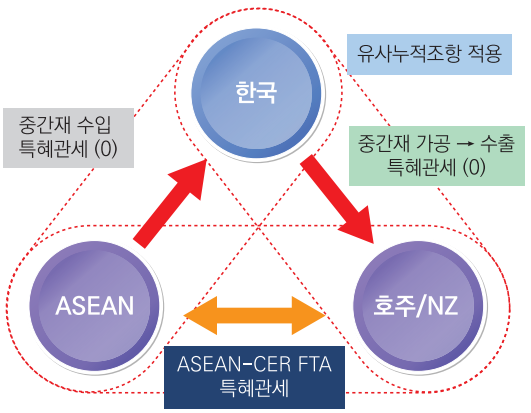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 다른 가능한 경우로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아세안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일본과도 협상 중이므로 아세안을 역내로 포함하는 유사누적기준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한국의 중간재 부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부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유사누적기준을 보수적인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다른 협정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은 1997년에 이미 PAN-EURO 누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사누적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 즉 부존자원이 부족한 EU 회원국들이 EU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근 국가들로부터 경쟁력 있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과 생산체계의 구축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그 적용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완전누적이 어떻게 보면 누적기준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TPP, RCEP 등 MEGA FTA의 후퇴 또는 보합(保合)으로 그 실현이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중인 FTA에 유사누적기준의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FTA 활용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소싱 체계 등에 급격한 변환을 주기에는

기타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꽤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FTA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글로벌 소싱 시스템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FTA 활용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적 이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유사누적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와 교역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한 자칭 FTA Hub국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누적기준의 도입은 더더군다나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원재료, 부분품의 외부조달 비율이 매우 큰 우리의 경우는 더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간재 기준과 누적기준 관련 기업들의 활용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자기 환경에 최적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미 자사에 맞는 글로벌 공급사슬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설계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틀을 살리면서 FTA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누적기준이다. 또한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로 하는 부분품이 무엇인지는 그 기업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부분품을 직접 생산하게 될 때 그 부분품에 투입될 수 있는 역외산 재료도 모두 역내산으로 전환된다면 전체 완전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두 경우 중간재 기준과 누적기준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여 엄격한 원산지기준의 잣대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경제 상황에서는 더 빛을 발하는 꽤 괜찮은 특례기준이다.

기업들은 기존의 틀을 부숴가면서까지 FTA를 활용할 수 없다고 그대로 포기하면 안된다. 이러한 특례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사 현황에 적극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에게 유리한 이러한 기준을 세련되고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산학연(産學研) 모두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TRADE REPORT